

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처리기간	즉 시
신청인	① 성 명	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 소 (전화번호:)			

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
	년 월 일까지

양도주식	④ 법 인 명		⑤ 사업자등록번호	
	⑥ 대표자 성명		⑦ 생년월일	
	⑧ 본점소재지			
	⑨ 보 유 주 식		⑩ 양 도 주 식	
	⑪ 양 도 시 기		⑫ 양 도 가 액	
	⑬ 양수인		⑭ 양수인 주민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⑮ 양수인과의 관계			
	⑯ 일련번호	⑰ 취득시기	⑱ 주식수	⑲ 취득가액
		계		

재 투자 법인주식	⑳ 법 인 명		㉑ 사업자등록번호	
	㉒ 대표자 성명		㉓ 법인등록번호	
	㉔ 본점소재지		㉕ 투자방식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6 조의8제1항제1호)	[] 가목 [] 나목 [] 다목 [] 라목
	㉖ 취득주식수		㉗ 주식가액	

㉘ 주식과세이연금액
(⑫ 양도가액 - ⑲ 취득가액 합계, ㉗ 한도)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
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2. 재투자 확인서(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) 1부 3. 정관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.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5.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(3)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. 다만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6조의8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재투자 확인서

출자자 (투자자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	

제 출 처	[] 원천징수 의무자 [] 납세자 조합	법인명(상호)			
		대표자(성명)			
		소재지(주소)			
	[] 세무서장	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	
투자조합관리자 등		법인명(상호)	(전화번호:)		

출자(투자)금액 명세						
출자(투자)내역				벤처기업 등 투자내역		
①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		④ 출자금액	⑤ 투자일	⑥ 투자 기업명	⑦ 투자금액
	② 조합명 (위탁회사명)	③ 출자총액				
계				계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- 1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2. ⑤ ~ ⑦란은 개인투자조합·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.

재투자 확인서

출자자 (투자자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 (전화번호:)			

제 출 처	[] 원천징수 의무자 [] 납세자 조합	법인명(상호)			
		대표자(성명)			
		소재지(주소)			
	[] 세무서장	주소지관할서		세무서장	
투자조합관리자 등		법인명(상호)	(전화번호:)		

출자(투자)금액 명세						
출자(투자)내역				벤처기업 등 투자내역		
① 출자일 (투자일)	투자조합(위탁회사)		④ 출자금액	⑤ 투자일	⑥ 투자 기업명	⑦ 투자금액
	② 조합명 (위탁회사명)	③ 출자총액				
계				계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
		없음

유의사항

- 1.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③란은 적지 않습니다.
- 2. ⑤ ~ ⑦란은 개인투자조합·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용을 적습니다.